◉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3-123호

「도로법」 제61조(도로의 점용허가)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71조(점용료의 부과·징수 및 반환) 제1항에 따른 고지서,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04월 14일

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

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최고서 공시송달

1. 제　　목 : 도로점용료 체납자 납부최고서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3.4.14.~2023.4.28.(15일간)
3. 공고대상 : 하단의 <공시송달 대상자 명단> 참조
4. 공고내용

가. 납부기한 내(~2023.5.4.) 체납된 도로점용료 미납시 「도로법」 제69조(점용료의 강제징수)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(강제징수) 규정에 의거 강제징수 절차 착수

나.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

- 제출기한 : 공고기간 내
- 제출내용 : 의견진술서, 증빙자료
- 제출방법 :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및 팩스(054.260.2529), 등기우편 이용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(☎054.260.2592)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<공시송달 대상자 명단>

순번	이름	실명번호	주소	체납금액	비고
1	(주)소담	174711-*******	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대경로	547,700원	
2	농업회사법인 온새미로	230111-*******	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내와로	426,320원	
3	백상ㅇ	620616-1******	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	50,390원	
4	정인ㅇ	601227-2******	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로	575,960원	
5	(주)포항자동차 매매단지	171711-*******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	2,978,220원	
6	안종ㅇ	620726-2******	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천문로	104,060원	
7	김경ㅇ	800202-2******	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로	10,803,550원	

끝.